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에서는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연구와 학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체평가하기 위해 설치되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에서는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자체평가계획의 수립과 자료의 수집에 관한 업무
2.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업무
3.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업무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업무
5.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원장이 요청한 업무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제외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내외의 인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자체평가연구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자체평가 기법의 연구·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이하에서는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안을 연구하고, 예비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체평가계획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조 (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실제적인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진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이하에서는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대학원 교무부원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총괄분과와 다음 각 호의 분과로 구성된다.

1. 1분과 : 학생
2. 2분과 : 교원
3. 3분과 : 교육환경
4. 4분과 : 교육과정
5. 5분과 : 교육성과

③ 총괄분과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세부분과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영역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조정하여 연구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자체평가보고서(안)를 작성한 후, 이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자체점검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본평가를 대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점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자기점검위원회를 둔다.

② 자기점검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교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09. 2. 23 제정)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 개정)

이 내규는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 1. 개정)

이 내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